

운행제한차량 단속원 직무교육

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운행제한차량단속팀

목차

1. 운행제한차량 단속업무 관련근거
2.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차량
3. 과태료 부과기준
4. 과태료 부과 업무절차
5. 운행제한차량 단속기준/단속장소/단속요령/주의사항
6. 민원사례

1. 운행제한차량 단속업무 관련근거

● 도로법 제77조(차량의 운행제한)

①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. 다만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● 도로법 제117조(과태료)
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다만, 차량의 운전자가 차량의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제77조제2항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하여, 제1항제2호에 따라 차량의 임차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● 도로법 시행령 제105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

① 법제1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7과 같다. 다만, 행정청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
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같은법 시행령

2.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차량 (도로법시행령 제79조 제2항)

- 축하중 10톤 및 총중량 40톤 초과 차량
- 차량의 폭 2.5m 및 높이 4.0m 초과 차량
- 차량의 길이 16.7m(연결 굴절차 19m) 초과 차량
- 관리청이 특히 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



3. 과태료 부과기준

-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**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에 적용**한다.

- 1)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.
- 2) **총중량 및 축하중 관련 운행제한기준 위반행위는 위반행위 횟수 계산시 통합하여 계산**한다.

나.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차량의 임차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면제할 수 있다.

● 위반횟수 산정기준



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

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

과태료를
부과처분한 날

- 사전통지후 과태료를 **자진납부**하였을 경우에는 **사전통지한 날**
- **과태료를 부과**하였을 경우는 **처분한 날**
- 과태료 부과 처분에 **이의제기**하였을 경우는 법원에서 **판결이 확정된 날**

예시1) 2013.5.10 축중량 1.5t초과 적발, 2013.5.11 40만원 자진납부한 운전자가
2013.5.20 축중량 1.8t초과로 적발되었다면 회차는 ? (2회차)

예시2) 2013.5.10 축중량 1.5t초과 적발, 2013.5.30납기(자진납부기한)로 사전통지서를 받고
자진납부전에 2013.5.20 축중량 1.1t초과로 적발되었다면 회차는 ? (1회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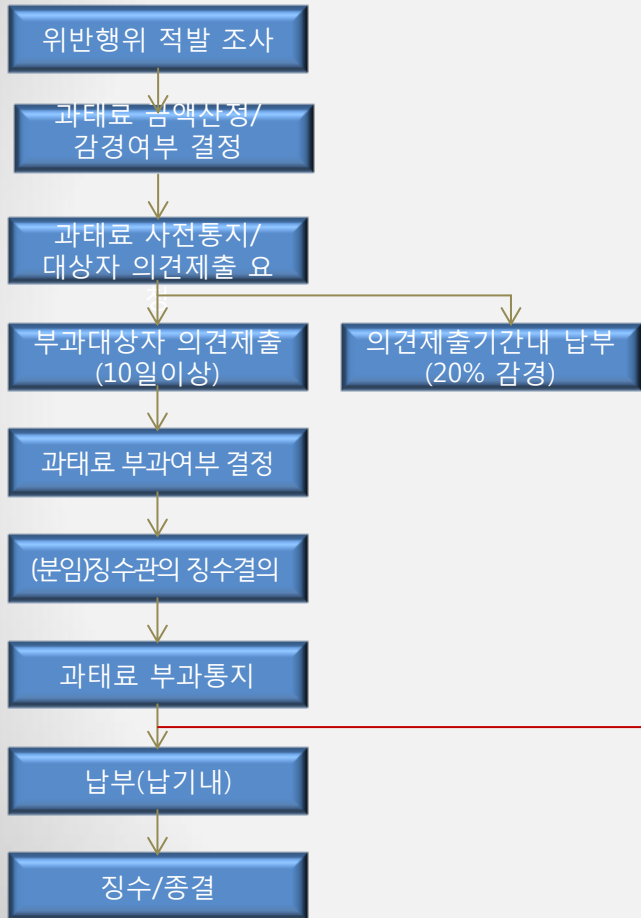
과태료의 부과기준 (제105조제1항 관련)

(단위: 만원)

위 반 행 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	
		1 회	2 회	3회 이상
1)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축하중을 2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총중량을 5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	법 제117조 제1항제1호	50	70	100
2)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축하중을 2톤 이상 4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총중량을 5톤 이상 15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	법 제117조 제1항제1호	80	120	160
3)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축하중을 4톤 이상 초과하거나 총중량을 15톤 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	법 제117조 제1항제1호	150	220	300
4)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차량의 폭을 0.3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, 높이를 0.3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, 길이를 3.0미터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	법 제117조 제1항제1호	30		
5)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차량의 폭을 0.3미터 이상 0.5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, 높이를 0.3미터 이상 0.5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, 길이를 3.0미터 이상 5.0미터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	법 제117조 제1항제1호	50		
6)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차량의 폭을 0.5미터 이상 초과하거나, 높이를 0.5미터 이상 초과하거나, 길이를 5.0미터 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	법 제117조 제1항제1호	100		
7)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 경우	법 제117조 제1항제1호	자목 1)부터 6)까지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금액		
차.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(임차한 화물적재 차량이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로 한정한다)	법 제117조 제1항제2호	자목 1)부터 7)까지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금액		
카. 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운행 제한 위반의 지시·요구 금지를 위반한 경우	법 제117조 제1항제3호	자목 1)부터 7)까지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금액		
타. 법 제96조나 제9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	법 제117조 제2항제7호	200		

4. 과태료 부과 업무절차

● 업무절차도



5. 운행제한차량 단속기준 (도로법 제77조, 도로법시행령제79조)

중 량

- 축중량 10t 초과
 - 총중량 40t 초과
- (기계오차 / 측정오차 10%)

높 이

- 높이 4.0m 초과
- (기계오차 / 측정오차 0.1m)

폭

- 폭 2.5m 초과
- (기계오차 / 측정오차 0.1m)

길 이

- 길이 16.7m 초과
- (기계오차 / 측정오차 0.2m)



5-1. 운행제한차량 단속기준 결정배경

중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급속한 경제성장 및 자동차 생산기술 향상에 따른 차량의 대형화 및 증량화 추세에 맞추어 도로구조물의 설치기준을 높이는데 정부재정형편 등에 한계• 차량의 화물운송능력에 따른 경제성, 차량자체의 주행안전성, 정부재정형편, 선진외국과의 형평성, 사회 경제 국방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
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우리나라의 모든 자동차는 선진외국과 같이 차량폭 2.5m 이하를 기준으로 제작• 모든 도로도 차량폭 2.5m이하를 기준으로 설계 시공되며 폭 2.5m초과차량이 운행시는 폭이 좁은 터널, 지하통로 등 도로횡단 구조물 파손위험과 인접차로 통행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여 통행량을 감소시키는 주요 원인(2.5m초과차량은 76~91년까지 작업장 등 구내운반용으로 등록)
높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국도, 지방도, 시군도 등의 경우 시공된지 오래된 구조물이 많고(전국 796개소) 높이에 여유가 없어 불가피하게 4.0m이하로 정하고 있으며, 선진외국도 우리나라와 같거나 오히려 더 낮게 정하고 있음.



축중 10톤=승용차 7만대, 축중 11톤-승용차11만대 통행과 같은 도로파손

5-2. 운행제한차량 단속장소 (차량의 운행제한규정 제13조)

1. 단속장소는 **화물차량을 용이하게 검문할 수 있는 장소**이어야 하고 **주행차로의 통행에 방해**를 주지 않을 것
2. 단속장소는 **평탄하고 견고한 노면**일 것
3. 단속장소는 운전자가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**종횡단경사가 없는 직선구간을 선정**하고, 도로시설물 등 **지장물이 많은 장소를 피할**것
4. 단속장소는 **야간조명이 가능한 장소**일것. 다만, 조명시설이 없는 경우 운전자의 주의를 유도할 수 있도록 **경광등을 설치**할 것

5-3. 운행제한차량 단속 근무요령 (차량의 운행규정 제16조)

1. 단속원은 **지정한 근무위치**에서 차량의 운행제한업무 수행
2. 단속원은 **검문소 시설 및 장비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**, 근무교대시 관련서류 인계 인수
3. 단속원은 근무복 등을 **단정하게 착용**하고 상시 신호봉(적색등화장치)를 휴대
4. 단속원은 검문소 시설 및 단속장비는 물론 **관련서류를 외부인으로부터 보호**
5. 단속원은 검문소로 **진입한 차량을 안전하게 유도**하고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
6. 단속원은 운전자에게 **측정결과 및 조치사항을 알려야** 하고 운전자가 안전하게 검문소 또는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움
7. 단속원은 위반차량 운전자로부터 면허증 등 **필요한 자료를 확인하여 관련서류를 정확하게 작성**하고 재측정을 한 경우에는 정도가 낮은 측정자료를 기준으로 서류 작성
8. 단속원은 자인서에 기재한 위반자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에 대하여 **자인자의 확인**을 받아야 함

1 운전자 공지사항 I

단속원은 운행제한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지하여야 한다(차량의운행제한규정제16조제14항)

1

- 도로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재량 측정 및 관계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정당한 사유없이 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

2

- 차량번호 0000호는 차량의 축하중 제한기준 10톤이 초과되었습니다.
차량의 운전자는 운전면허증, 차량등록증, 화물수탁증(운송장 등)을 제출하십시오

3

- 자인서에 기록된 차량등록번호, 운전자, 적발장소, 위반내용을 확인하시고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, 연락처(전화번호)를 거짓없이 자인하시기 바랍니다

4

- 도로법 제77조, 제117조에 따라 운행제한을 위반한 운전자, 운행제한기준을 위반 하도록 지시한 차주, 화주, 화물운송사업자는 과태료 처분되며 임차인은 관리소홀을 신고할 때에는 임차인의 처분결과에 따라 운전자 과태료 면제

2 운전자 공지사항 II

5

- 과적을 지시하거나 요구한 화주 등이 있거나 화물적재를 사실상 관리하는 임차인이 과적을 방지하도록 관리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자인서에 그 사실을 신고 기록하고, 적발시 신고하지 못할 때에는 사전통지서 수령시 의견을 제출해야함

6

- 화주,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,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 등이 교부하는 화물수탁증(운송장)과 임대차 계약서 등의 자료를 증거로 제출할 때에도 운전자외 실질적인 위반자를 처벌할 수 있음

7

- 도로법 제77조 제4항에 따른 재측정을 위한 관계공무원의 동승 요구에 대하여 불응할 경우에는 도로법제115조제4호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

3

단계별 단속요령(예시)

계측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인사(수고하십니다) ② 서부도로사업소 과적단속반 000입니다 ③ 운전중인 차량의 도로법 제59조(차량의 운행제한) 위반여부를 확인하기위해 계측하고자 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시간은 약 15~20분 소요될 예정입니다. ⑤ 감사합니다.
적발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운행중인 차량은(적발내용 고지) 도로법 제59조를 위반하여 운전자께서는 면허증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(정확하게 자인서를 작성후 운전자에게 제시)작성된 자인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확인후 자인서에 자인(서명)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(PDA입력)PDA내용을 확인하신후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축중량(총중량) 적발시 전산장애로 위반횟수가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았을경우에는 사전통지서가 변경(정정)되어 등기발송됩니다 ⑥ 안전운전하시고 안녕히 가십시오
미적발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② 안내문을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③ 안녕히 가십시오

5-3. 단속업무시 주의사항

1

추적단속업무시 주의사항

- ① 자동차 전용도로 추적 단속시 **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여 차량을 유도**
 - 과적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과적단속차량을 운행할 경우에는 사이렌과 경광등을 켜야 하고 정차한 경우에는 사이렌을 꺼야한다(차량의 운행규정 제14조 제11항)
- ② **급차선 변경금지 및 운전자 인지정도(화물차량 속도)확인**후 안전지대로 천천히 유도
- ① 시계지역으로 추적시 **추적사진(시내구간 인지가능)확보**
 - 주행중인 차 뒤에서 촬영(지역구분할 수 있는 사진, 주위 도로환경 인지가능한 사진)
- ④ **추적 적발차량 단속지점 정확히 작성**
 - 몇시경 00 지점에서 발견 추적하여 00지점으로 유도한후 계측함

2 증빙자료 작성시 주의사항

높이, 폭, 길이위반

- ① 높이, 폭, 길이 계측시 시작점과 도착점이 모두 나오게 전면 촬영
- ② 시작점, 도착점 근접촬영 (계측수량 인식중요)
- ③ 도착점은 막대자 측정시 안쪽점(아래점)으로 명시



근접사진 촬영

- ① 카메라 모드 접사(꽃모양 아이콘)를 설정 피사체에서 40cm이상 거리유지(면허증)
- ② 축중계 촬영시 60cm이상 거리유지(타이어 확보하여 촬영)



서류작성

- ① 위반장소는 상세히 기술(신주소 적용)
예) 서대문구 북아현동 아현고가아래 가구상가앞 총정교 32t
마포구 상암동 강변북로 일산방면 하늘공원앞(가양대교 아래)
마포구 상암동 가양대로 가양대교 북단
- ② 축중량 표시는 좌측 우측 확인후 명시

6-1. 민원사례

1

주요민원

- 자동차 전용도로 및 고속주행시 추적단속으로 사고위험이 있음
- 단속안내표지판 설치없이 무리한 차량유도로 사고위험이 있음
- 위압적 단속태도(범죄자 취급하며 계측유도)
- 재계측요구 무시(재계측할 의무가 없다고 안내)
(차량의 운행제한규정 제12조 제9항)
제한기준을 초과하여 단속된 차량으로서 운전자, 차주, 화주가 재측정을 요구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재측정 할 수 있다.
- 적발위주의 단속(특히 종이, 재활용품 운전자) : 도로에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데 적발 운전자의 이해를 유도 도로의 구조를 보존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여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함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현장방문 계도 요청(관할구역이 아님, 점심시간 또는 교대시간 등이라는 이유로 회피)
- 운전자 질문에 불성실한 답변(정확한 대답 및 고지의무 없다)

감사합니다.